

## 정신병원에서의 폐쇄병동 격리조치와 결박조치의 위헌 여부<sup>1)</sup>

### 1. 사건개요

정신병원에서의 폐쇄병동 격리조치와 결박조치에 관한 공중보건법전 제 L.3222-5-1조<sup>2)</sup>는 2016년 1월 26일 법률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제청신청인 Éric G.는 2019년 11월 26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고, 2019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폐쇄병동 격리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제청신청인은 이러한 격리조치를 규정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파기원에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파기원은 2020년 3월 6일 헌법재판소에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19일 위헌결정을 하였다.

###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정신병원에서의 폐쇄병동 격리조치와 결박조치가 체계적인 사법심사를 수반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66조가 보장하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격리조치나 결박조치를 당한 자에 대한 어떠한 권리구제수단도 규정하지 아니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송참가인인 프랑스 인권연맹, 법과 정신의학 변호사 연대, 정신의학 분석과 행동 연대는 효과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역시 주장하였다.

---

1) Décision n° 2020-844 QPC du 19 juin 2020.

2) 공중보건법전 제L.3222-5-1조 “① 격리조치와 결박조치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는 환자 또는 타인에 대한 즉각적이거나 임박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만 시행될 수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결정 하에 제한된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격리조치와 결박조치는 관련된 임무를 맡은 보건 전문가가 소속된 병원의 감독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 법전 제L.3222-1조 I을 적용하여 강제적인 조치를 하기 위하여는 정신과 전문 등록을 완료하고 각 레지옹 보건청의 기관장에 의하여 승인된 병원의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격리조치나 결박조치를 기록하는 경우 결정권자인 정신과 전문의, 날짜 및 시간, 기간 및 감독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전산화될 수 있으며 도 단위 정신과 위원회, 자유 박탈 장소의 조사관 및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③ 기관은 매년 폐쇄병동 격리조치와 결박조치에 대한 기록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방침과 조치 시행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본 법전 제 L.1112-3조에 규정된 사용자 위원회와 본 법전 제L.6143-1조에 규정된 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다.”

### 3. 판단

#### (1) 심판대상조항

본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의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보건법전 제L.3222-5-1조이다.

#### (2) 공중보건법전 제L.3222-5-1조의 위헌 여부

1) 헌법 제66조는 “어느 누구도 임의적으로 구금될 수 없다. 개인적 자유(liberté individuelle)의 보장자인 사법적 권한(autorité judiciaire)<sup>3)</sup>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원칙에 대한 존중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한다. 개인적 자유<sup>4)</sup>는 사법적 권한에 의하여 보장되며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이 기본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필요적이며 비례적이어야 한다.

2) 강제입원 하의 정신과 치료를 수반하는 정신병원에서의 격리조치는 폐쇄병동에 환자를 구금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박은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는 강제입원 외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시행되지 아니하며 강제입원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격리조치와 결박조치는 자유에 대한 박탈을 구성한다.

3) 공중보건법전 제L.3222-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환자에 대한 격리조치나 결박조치는 환자 또는 타인에 대한 즉각적이거

---

3) 프랑스의 경우 헌법상 사법권(pouvoir judiciaire)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사법적 권한(autorité judiciair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1789년 대혁명 주동세력의 구체제 하의 법원, 특히 고등법원(Parlement)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하였으나,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각종 결정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사법권의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한동훈, 프랑스의 위헌법률심사제도, 비교헌법재판연구 2012-B-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2, 8.

4) 프랑스 헌법상 개인적 자유는 프랑스 특유의 개념으로, 개인의 활동의 자유와 사상 내지 정신적 자유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는 개인의 활동의 자유로, 양심의 자유, 교육의 자유, 정보의 자유, 공연의 자유는 사상 내지 정신적 자유로 분류할 수 있다.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807.

나 임박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만 시행될 수 있으므로 정신과 전문의의 결정 하에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관련된 임무를 맡은 보건 전문가가 소속된 병원의 감독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중보건법전 제L.3222-5-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강제적인 조치를 하기 위하여는 정신과 전문 등록을 완료하고 각 레지온 보건청의 기관장에 의하여 승인된 병원의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격리조치나 결박조치를 기록하는 경우 결정권자인 정신과 전문의, 날짜 및 시간, 기간 및 감독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기관은 매년 폐쇄병동 격리조치와 결박조치에 대한 기록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방침과 조치 시행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사용자 위원회와 감독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다.

4)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강제입원한 환자에 대한 격리조치나 결박조치가 환자의 상태에 부합하고, 필요한 경우에 비례적인 범위에서만 시행되도록 요건을 설정하였다.

5) 헌법 제66조가 모든 개인적 자유의 제한은 사법적 권한에 의한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더라도, 사법적 권한이 모든 종류의 자유 박탈에 대한 선결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강제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격리조치나 결박조치를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66조를 위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6) 한편, 개인적 자유는 사법적 권한에 의해 신속하게 구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입법자는 격리조치와 결박조치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만 결정될 수 있으며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면서 그러한 기간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 사법심사에 따라 격리조치와 결박조치

가 유지될 수 있는 요건 역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격리조치와 결박조치가 합헌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인 헌법 제66조에 부합하는 사법심사를 규정한 법률조항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7) 그러므로 다른 제청이유를 볼 것 없이 공중보건법전 제L.3222-5-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동조 제2항 및 제3항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 (3) 위헌선언의 효과

1) 헌법 제62조 제2항은 “제61-1조에 따라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공포시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장래의 시기부터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규정이 발생시킨 영향들이 재검토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들을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위헌선언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인이 그 수혜를 받아야 하며 위헌선언을 받은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소 관보에 공고되는 날부터 재판에 적용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62조는 위헌선언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결정으로 위헌선언된 법률이 폐지되는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조항은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된 법률조항에 대한 국가의 권한행사를 저지하고 재검토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2) 이 사안에서 위헌선언된 법률조항을 곧바로 폐지하는 것은 강제입원한 환자에 대한 모든 격리조치나 결박조치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명백하게 과도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폐지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한다.

## 4. 주문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제1조

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2016년 1월 26일 제2016-41호 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공중보건법전 제L.3222-5-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 제2조

제1조의 위헌결정 효력은 이 결정 3. (3) 2)<sup>5)</sup>에서 정한 요건 하에 발생한다.

#### 제3조

이 결정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공고되며, 1958년 11월 7일 법률명령 제 23-11조<sup>6)</sup>가 정한 조건에 따라 통지된다.

---

5) 원문에서는 11).

6) 1958년 11월 7일 법률명령 제23-11조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유가 부기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국사원, 파기원, 필요한 경우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제기한 당해 법원에 통고된다. (2)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결정을 대통령, 수상, 하원의장, 상원의장, 제23-8조 마지막 항에서 규정된 경우 동 조항에서 언급한 관계기관에 통고한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화국 관보에 공고되며, 필요한 경우 누벨칼레도니아 관보에 공고된다.”